

「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한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기금의 설치, 존속기한, 재원, 용도에 대한 규정(안 제3조~제6조)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(안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회의에 대한 규정(안 제9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제4항
 - 「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제4항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」 운영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」 운영¹⁾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(부지 제공 등)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며,
- 조례안이 기금의 조성, 존속기한, 용도, 운용계획 및 결산,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제안사업의 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부서에서는 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1) 「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」 관련 경과

-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'23. 11. 24.
- 행정예고(4. 19.까지) : '24. 03. 28.
- 사전협상 운영지침 고시 : '24. 05. 08.
-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: '24. 9월 중

- 다만,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제4호의 ‘시장’을 ‘구미시장’으로, 안 제7조제1항의 ‘시장’을 ‘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’로 수정하여 주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, 반복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약칭으로 표현해야 하며,
- 관계 조항 표기가 잘못된 안 제6조제4호의 ‘제8조’를 ‘제9조’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됨.
- 또한, 향후 조례안 제출시 관련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